

의안번호	2208464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5. 6. 5.
추계번호	25B11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는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함(제8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재직기간과 유사업무 종사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산정(안 제77조제8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운행제한단속원의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보수체계를 분석하고, 해당 직무분석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보전이 필요한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미비하여 합리적으로 보수 보전액을 추산하기가 곤란함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급, 호봉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유사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개별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보전 금액을 추산하기가 곤란함
- 특히,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통해 일정기간 근무 후 이동하게 되고, 새로이 영입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개별 공무원의 입직 시기, 직급, 호봉,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따라서 직무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기준을 수립하여 양 종사자간의 보수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미비하여 합리적으로 보수 보전액을 추산하기가 곤란함

○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운행제한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공무직 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음

- 이때, 운행제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공무직 근로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됨

[표 1] 운행제한단속 업무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연봉

(단위: 백만원)

구 분	현원 (명)	평균 기본급 (천원)	평균 호봉	평균 월 근로시간 (시간)	총급여(연봉기준)				1인당 평균 연봉
					소계	본봉	수당	시간외	
일반직공무원	25	3,239	15	209	1,596	1,062	468	73	63.8
공무직근로자	585	2,427	17	190	26,071	16,345	3,283	6,443	44.6

자료: 국토교통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